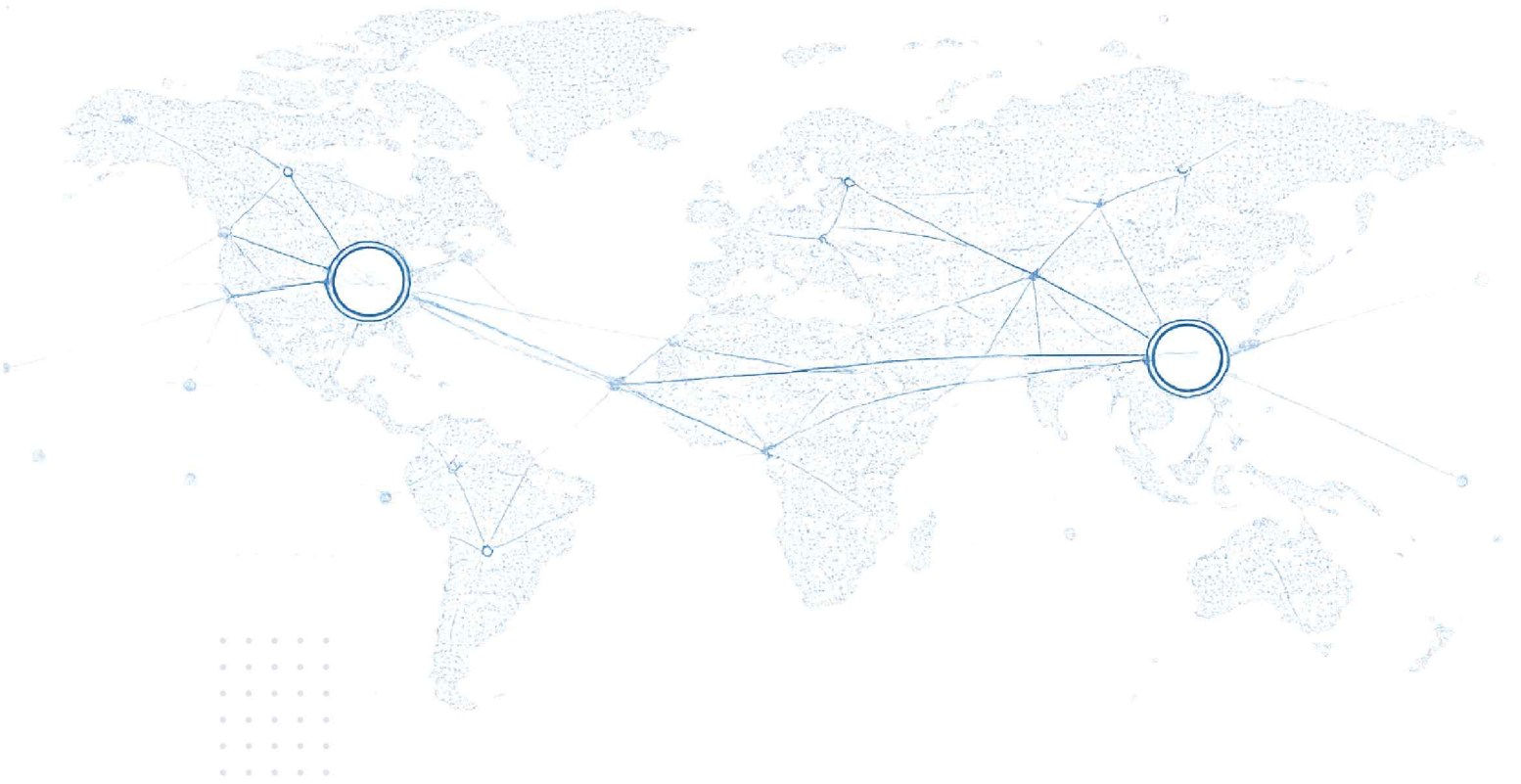


# 전략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연구

권은하 | 권용우 | 조현주 | 안준호 | 강주영



미래전략컨설팅  
MIRAE CONSULTING GROUP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 국제적으로 기술이전이 용이해지면서 전략기술의 불법적인 유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y)은 전략물자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되는 기술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는 그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전략기술의 유출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방법도 다양해진 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술의 무형이전’이다.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이란 기술자료(technology data)를 전화나 팩스, 혹은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전하거나, 기술지원(technology assistance)을 타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 지도·연수, 자문·컨설팅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전함을 의미한다. 즉, 기술자료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지식의 이전, 기술지원은 사람을 매개로 한 지식의 이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고심하기 시작하였고,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통하여 기술의 무형이전에 관한 통제지침을 마련하였다.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에 관하여 처음으로 논의가 된 것은 2001년 바세나르체제 총회로, 회원국들은 이전방법(유형 혹은 무형)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무형이전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그 이행에 관한 경험을 회원국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2006년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회원국내 법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이행을 위한 최적관행(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Controls)’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무형이전의 통제이행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2009년부터 기술 무형이전의 법제화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13년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체계화되었는 바, 모든 형태의 “기술이전”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허가 대상도 국적 개념을 도입하여 확대·적용하였다.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

2, 3을 신설하여 통제되는 기술의 무형이전 방식과 공개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3년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동법에서는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관한 허가만 규정하고 원자력전용품목 및 관련 기술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그 법체제와 제도는 대체로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의 무형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 지나쳐 연구와 학술활동 관련 국제 교류나 협력 등이 크게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현장 적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효용성을 크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수출통제의 원칙은 고수하되, 유형이전과는 별도로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히 학계나 연구계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준칙을 개발·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보안 문화의 증진과 같은 보완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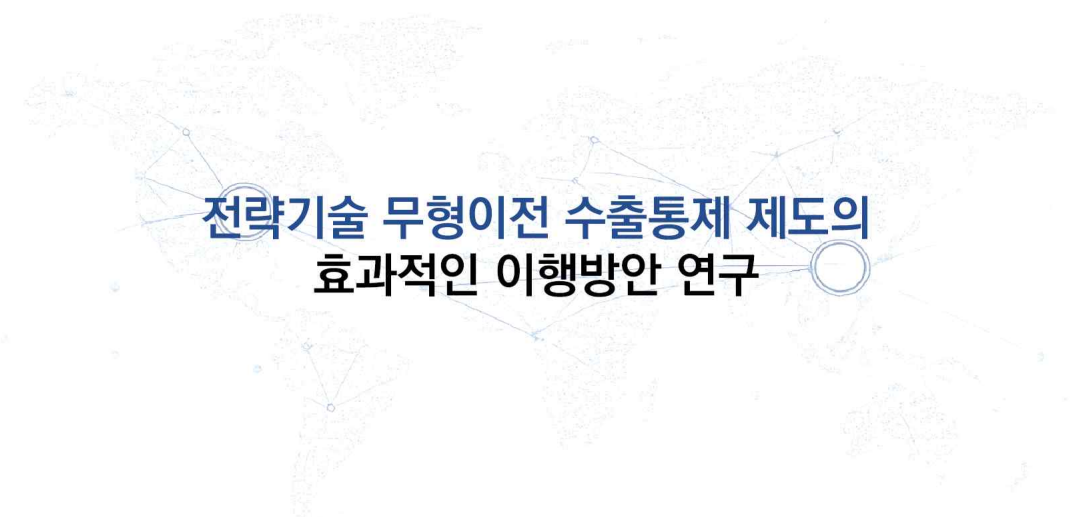
## 2. 연구 목적

본 과제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과 관련하여 산·학·연 등 실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제도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수출통제규범의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이란 기술자료(technology data)가 전자적 수단이나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하여 무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내법적 체계는 이미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기술이전 방법의 다양성이나 용이성, 원상회복이나 회수의 어려움, 사후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기술이전에 따른 추적 및 적발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무형이전의 특성과 이전 매체인 전자적 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한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수출통제제도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의 무형이전 수출통제 현황

과 이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이행상의 한계와 미비점을 우선 파악하고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편 최신의 기술진보 및 환경변화에 따른 고려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의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국내·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현황 및 이행 실태 분석
- 현행 국내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의 장애요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최신 기술진보와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수립
-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을 보유한 피규제자 입장을 고려한 수출통제 이행정책 제안



# 전략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연구



주 소 | (01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8층 R894호  
전화번호 | 042-472-3822  
이 메 일 | mirae@mcg.re.kr